

제423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20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2.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5)
6. 한우산업 기본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7.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9)
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1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1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1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2)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1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1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19.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1)  
2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9)
- 

### 상정된 안건

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	5
2.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	5
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	5
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	5
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5) .....	5
6. 한우산업기본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	6
7.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9) .....	6
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	6
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	6
1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	23
1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	25
1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2) .....	30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	32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	32

---

(10시12분 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법안소위를 2주일에 한 번씩 열기로 국민의힘하고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맞습니다. 둘째, 넷째.

○임미애 위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무도 참석하고 있지 않고요.

더욱더 황당한 것은 집행부서에서 지금 전혀, 한 사람도 참석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지난 전체회의 때 서천호 위원께서 현재를 부숴 버리자라고 한 발언 관련해서, 저는 그때 회의의 후반부에 왔는데 그때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현재를 부숴 버리자라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없어서 지적하고 비판을 했던 것 같고 피케팅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나갔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원래 그다음 주, 지난주가 법안심사소위원회인데 아직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그때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이지요. 목요일 날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다음 주에 하자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 연기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 법안 심사에 특별하게 쟁점 법안이 없었고 또 한우법 관련해서는 제가 여야 간에 서로 동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해서 처리하자 그런 기조를 여당 간사께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전에 갑자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로 제가 전언은, 첫 번째는 서천호 위원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뭐랄까, 제 해석입니다. 아직도 수용이 안 된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국이 엄중하고 복잡하니까 법안소위를 못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전언이 왔고요. 제가 정희용 위원한테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리콜도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법안심사는 매월 두 번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대로 진행을 하자, 민생 법안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수용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정부 측은 어제 차관이 전화가 왔는데 여당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가 구제역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제역 문제야 심각성이나 민감함을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차관이 못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와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오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배경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일단 서천호 위원의 헌정질서 파괴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가 항의했던 것은 분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리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민생 법안 심사는 이렇게 내팽개치면서 이분들 지금 현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헌법재판관들한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행동인 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련 때문에 지금 차관도 못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제역 문제는 심각한 것 분명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호남권에서 비상이 걸려 있는 것은 아는데요. 정작 현장에서 구제역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가축방역관들의 처우나 일하는데 작업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뒷전이었던 차관이 이 와중에 가축방역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이고 이 기관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처우 문제에 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오늘 다루는 법이 수의사법이 있고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법안들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차관이 이렇게 참석하지 않으면서 평계를 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마 여당 요청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후에라도 저희가 집행부에다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다른……

○**문대림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이원택**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어쨌든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 주는 태도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민생 문제보다 정파적 문제를 우선시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서천호 위원의 헌정질서 파괴에 관한 그 발언은 공개적 사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인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동료 위원으로서 마주하기 힘든 정도의 감정을 느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지적과 사과가 없이 지나가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헌법개판소’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아니면 국힘을 제외한 진보당 위원님과 민주당 위원님들 차원에서 공식적 의사 표시로서의 항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앞에서도 임미애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 정부기관을 쳐부수자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해 놓고 아무런 사과도 없이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이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가. 자격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란수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도 국회도 다 내팽개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러고도 집권 여당이라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싶고요.

저는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공개 사과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취해 온 태도, 적반하장뿐만 아니라 후안무치지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봐주다 보니까 이런 후안무치적 행동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공개 사과뿐만 아니라 서천호 의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이런 의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지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관련한 강력한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 내용은 정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정부가 국민의힘 하수기관입니까? 하부기관이에요? 국민의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공식적인 국회 회의에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가 있지요? 국민을 위한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연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국민의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이런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한다면 정부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지요. 이것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고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부기관도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 의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도 강력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지금과는 다른 좀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여기구 위원장과 협의해서요, 농해수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한 지적과 또 대안을 좀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제가 이런 경우가 지금 두 번째로 기억이 납니다. 여당하고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 법안심사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어진 법안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정부 측 의견은 뭐 서면으로 제출된 게 있지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에 모든 판단과 권한을 잠정적으로 인정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법안심사를 통해서 현재의 민생 법안 또 현안 법안들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려면 법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2.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45)

6. **한우산업기본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7.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9)
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10시24분)

○**소위원장 이원택** 먼저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안 7건과 축산법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9건의 법안 중 소위 심사자료 1번은 1번부터 8번 안건입니다. 먼저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25일 날 1차로 법안심사소위를 했고요. 그 이후에 박덕흠·임미애 의원안이 저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진술인 중에 한우산업 지원법안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반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공통적으로 한우농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주문하면서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 제정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제정안 검토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월 23일 날 법안심사소위가 두 번째로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한우지원법의 제정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정란으로 태어난 소의 한우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우지원법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농림부에서는 한우의 고유한 특성 중 어떤 부분을 한우지원법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소위 이후 직회부된 박덕흠 의원안과 임미애 의원안을 보면 박덕흠 의원안은 23조에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규정이 있고, 임미애 의원님 안은 15조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들어 있고, 한우 유전자원 보호·육성 등 한우만의 고유한 특성을 제4장으로 규정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7건의 제정안 중 1번 한우의 정의와 관련해서 송옥주 의원님과 임미애 의원님 안은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소’ 이렇게 별도로 규정하셨고, 2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윤준병 의원님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번 4번의 심의사항 중에 박덕흠 의원님 안은 우수한 한우 유전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지원, 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우의 수급조절, 연번 5번과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님은 자금의 출처별 책임 차등 방안이 새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7번에 박덕흠 의원님 안은 사료안정기금 설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임미애 의원님 안은 연번 12번의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관련해서 자금 지원 시 우대조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15번 기업의 생산업 진출과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님은 기업의 한우 생산 참여 원칙 제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번 16번부터 20번까지는 한우 유전자원 보호부터 한우의 날 규정 이런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요.

이어서 소위 심사자료 2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14일 날 이것도 같이 논의했는데요. 정부에서는 별도의 한우지원법 제정보다는 조경태 의원 개정안처럼 축산법 개정이 효율적으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소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경태 의원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소위 위원이신 문금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한우법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는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포는 안 했는데 필요하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이 오지 않은 관계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대림 위원** 한우협회 쪽 입장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안에 대한 한우협회 쪽 입장.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자료 1번의 6페이지에 보시면 전국한우협회 입장이 나와 있는데요. 맨 하단입니다. 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현행 법령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정안 찬성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한우협회는 저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 제정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요청이라는 말씀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법안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우의 규정이 저하고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하고. 저와 송옥주 의원안이 조금 같아요. 뭐냐하면 한우협회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우협회 내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입니다. 요즘 최근에 좋은 정액을 구해서, 암소 도축할 때 난소를 추출해 가지고 수정란을 만들거든요. 수정란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른 어미소한테 이식을 해서 태어나는 송아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송옥주 의원하고 저는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소를 한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수정란을 한

우 어미한테 이렇게 착상을 시키면 일정하게 크다가 안에서 사산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량형질의 송아지다 보니까 큅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기준의 한우 어미소몸에서, 그 자궁 안에서 송아지가 성장하기가 조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사산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수정란을 젖소한테, 젖소는 새끼를 낳아야 젖을 짤 수 있고 그게 암송아지든 수송아지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소농가의 이해하고 수정란을 착상시켜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경우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수정란을 젖소한테 착상을 시켜서 한우를 생산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수, 이렇게 해서 태어난 송아지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한우가격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견이 한우협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소를 한우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가 막는다고 해 가지고 이런 기술의 발전이 중단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시장이 따로 형성되어야 되는데 따로 형성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우 공급 시장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수정란을 젖소에 이식시켜서 태어나는 송아지의 경우도 한우로 보고 한우 공급 시장 내에 이들을 편입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농림부에서도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다라는 젖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우협회와 축산 당국하고는 견해가 좀 나뉩니다. 그 외에는 쟁점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소위원장 이원택 심사를 진행해 가야 되는데요.

지금 20페이지에 목적 조항이 있습니다. 목적 조항 중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문금주 의원안을 토대로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칙의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적은 그렇게 문금주 의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저도 다 봤는데 대동소이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법 제명 19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나중에 논의하시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원택 법 제명? 이 부분도 논의를 하지요, 뭐.

법 제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문금주 의원안을 기본 토대로 한다고 하니까, 저도 빌의는 했지만 문금주 의원안의 법 제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목적, 아까 동의가 됐고요.

정의 개념인데 지금 21페이지 정의를 보면 한우의 개념하고 한우농가의 개념하고 한우산업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에 관련된 정의 개념이 아까 어기구·이원택·문금주·윤준병 의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송옥주·임미애 의원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한우농가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한우산업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우농가, 한우산업에 대한 개념은 문금주 의원안을 토대로 정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우에 대한 정의는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젖소에다가도 한우를 이식해서 키우는 것도 있고 실제 한우농가들이 그렇게 일부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우협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앞의 세 가지 정의 개념 중에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에 대한 정의 중에는 문금주의원안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팬찮으시겠지요? 제가 조문 안 읽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읽는 걸로 하고.

한우는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소로 규정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한우협회의 공식 의견은 들은 적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저희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냥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사항이고요. 한우협회……

○**임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청회 왔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봤을 때 이쪽 끝에 계셨던 그 박사님……

○**소위원장 이원택** 민경천 회장님?

○**임미애 위원** 박사님은 제한을 두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다른 분들은 의견을 따로 피력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의결까지 가는 게 아니라면 한번 더 전문가들한테 의견 회람을 이 부분만 꼭 집어서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위원님, 한우는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것을 한우로 규정한다에 대해서 혹시 원칙적으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전종덕 위원**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닌데요.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취합해 보는 것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방금 정한 문금주 의원안 정의에 보면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의에 부합한다면 임미애 의원님이나 송옥주 의원님 안이 반영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의미에 부합해서 한우를 정의하려면.

○**임미애 위원** 그런데 DNA가 섞이지는 않아 가지고 이게 논란이 많은……

○**소위원장 이원택** 이 해석 문제가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DNA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아까…… 후자의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소라는 것은 명백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소를 한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한우협회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듣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석전문위원님, 이것도 문금주 의원님 안 토대로 심사해도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여기 국가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항에 대해서 낭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금주 의원안을 놓고요. 특별하게 다른 의견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문금주 의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24페이지에 보면 송옥주 의원안 4항이 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반 의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안과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추가로 한 건이 더 있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은 필연적으로 가능한데, 해야 되는데 이걸 의무화하는 조항을 집어넣은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통상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을 집어넣는 건 법체계상 문제…… 통상적으로는 법체계상 넣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통상적으로 예산 수반 내용까지 들어가지는, 입법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시책에 특히 이렇게 넣는 건 적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은 국가의 책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정해지면 그걸 수행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법체계에 넣을 거냐 말 거나인데 통상적으로는 안 넣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꼭 강조해야 된다면 넣어도 이것은 국회의 고유 입법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넣을 수도 있는데 다른 의견 없으면 이 부분은 생략할까요?

○**임호선 위원**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송옥주 의원님 없다고 해서 빼는 건 아닙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금주 의원님 안 2항을 보면 여기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원택**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5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호선 위원** 방금 전 23쪽의 2항에 문금주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는데 여기구 위원장님 안을 보면 2항에 국가도 같이 지원방안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덕흠 의원안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조항을 달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예, 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니까 여기구 위원장님은 1항과 2항에서 공통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셨고 문금주 의원님은 1항에서 국가, 2항에서 지자체장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2항에서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이 부분을 포인트로 두셔서 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볼 때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이 법이 성립되면 추진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원방안은 똑같을 것 같고요. 다만 문장상 어떤 표현을 쓰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내용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문금주 의원안은 또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특성을 감안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할까요? 문금주 의원안 중에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가 지원방안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장을 좀 임호선 위원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추가를 할까요?

○**임호선 위원** 글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 그러면 이렇게 좀 변경을 해 보지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검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소위원장 이원택**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지원방안 마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게.

그러면 23페이지 심사는 정리하겠습니다.

25페이지, 5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이것도 문금주 의원안을 기초로 보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윤준병 의원님 안은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는.....

○**소위원장 이원택** 모든 것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가 윤준병 의원안입니다. 문금주 의원안은 한우산업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에 따른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고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윤준병 의원님 안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법체계상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윤준병 의원님은 지금 법 제명도 특별법이라서 이렇게 규정한 것 같은데요. 지금 축산법이라는 다른 법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안처럼 문금주의원안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타 법 중에 축산법에서 규정된 게 있는 거고 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이쪽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문금주의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6번인데요. 종합계획 관련한 겁니다.

정부 의견은 서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우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제5조 종합계획과 관련된 1항, 2항이 있고 2항에 7호까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10호까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10호까지 있네요. 그다음에 3항도 추가로 돼 있고 5항, 문금주의원안을 중심으로 본다면 7항까지 있구나.

위원님들, 종합계획의 수립 1항에서…… 이거 제가 조문 낭독 안 해도 되잖아요? 위원님들 한번 보셔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금주의원안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29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의원님들과 차이가 있는 게 송옥주의원님의 2호에 한우산업의 국내외 여건,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할지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29페이지인데요. 박덕흠 의원님 2호에, 7호 옆에 2호가 있는데요. 자급률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하실지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종합계획 쪽에 29페이지 중단부의 송옥주의원안을 보면, 이게 지금 2호지요? 몇 항의 2호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2항의 2호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2항의 2호에 한우산업 국내외 여건,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하고 그 옆에 보면 박덕흠 의원의 자급률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이것은 중복되지 않으면 두 안을 집어넣어서 종합계획 수립도록 하지요.

○**임호선 위원** 예, 포함시키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송옥주의원안은 7호도 있는데요. 한우 자급률 7호하고 박덕흠 의원님 2호가 비슷한데 이것도 다 같이 넣어도…… 29페이지입니다. 송옥주의원님은 자급률 확보를 규정하고 있고……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 부분을 한우의 자급률 확보에 관한 사항 및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자급률 및 한우 적정 사육두수.

○**소위원장 이원택**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요, 각각 넣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한 문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우의 자급률 확보 및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 자급률에 따른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 이러면 되겠네요.

○**임호선 위원** 자구를 수정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자급률하고 그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으로 정리하기보다는 박덕흠 의원님 안처럼 예를 들어 한우의 자급률 확보 및 이에 따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한우의.....

○**임호선 위원** 자급률 확보 및 이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이런 식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예, 문안을요?

○**임호선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전문위원님, 어떤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방금 이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으시지요?

그러면 35페이지,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작성·관리 부분이고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33쪽에 보면 박덕흠 의원님 시행계획 제6조가 32페이지 맨 하단과 33페이지인데 시행계획 수립 이 내용은 박덕흠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반영할지를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건 반영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반영할 경우에 여기 시행계획을 약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조 시행계획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도별 시행계획(이하 ‘시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 이렇게 약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문에서 적용하고.....

○**소위원장 이원택** 시행계획이 있으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자구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반영하고 시도별 시행계획으로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35페이지의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작성·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전문위원님, 문금주 의원안 중심으로 검토해도 되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또 다른 의원님들 견해 차이가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6조에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6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이것은 낭독 안 하겠습니다. 조문 낭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번 실태조사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금주 의원안으로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한우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문금주 의원님 안 중심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면 되겠지요?

다른 의원님들 또 추가된 안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것도 조문 낭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금방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러면 문금주 의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관련된 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도 문금주 의원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된 다른 의원님 안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41페이지에 박덕흠 의원안의 3호에 우수한 한우 유전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지원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위원 수를 윤준병 의원님은 2항에서 2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견해는 없으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다음에 43쪽에 윤준병 의원님 2호에 고공단 공무원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수한 한우 유전자 보호 심의 대상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지원도 심의 대상에 넣는 것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협의회 인원과 관련해서는 21명이냐 20명이냐인데 통상 짹수로 합니까, 홀수로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자료 보시면 46페이지에 축발위는 25명, 수급조절은 15명, 홀수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것은 21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에 고공단 넣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다른 의원님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윤준병 의원님은 그중에서도 고위공무원단 이렇게 특정해서 하셨습니다.

○전종덕 위원 고위공무원단이면 기준이 어디까지이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고공단이면 2급 이상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국장급 이상입니다.

○전종덕 위원 3급 공무원이나 2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뜻인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소속 공무원이면 과장이든 팀장이든 농식품부에서 자율적으로 배치를 하면 되는데 윤준병 의원안은 이 협의회의 어떤 기능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꼭 국장급 이상이 참여토록 강제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의견 없으면…… 통상적으로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법체계상?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통상으로는 다른 의원님들처럼 소속 공무원……

○소위원장 이원택 소속 공무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소속 공무원으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리고 윤준병 의원님, 바로 43쪽 맨 위에 보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한우협회나 한우협동조합연합회, 그러니까 업계분을 3분의 1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3분의 1 이상 한우협회나 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여해야 된다는 걸 규정하는 강제 규정 말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임호선 위원 너무 법에다가 세세하게 정하기보다는 다른 의원님들 안처럼 분과위원회, 협의회 이런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다 위임을 4항에 뒀기 때문에 그냥 대령으로 위임해 두는 다른 의원님 안처럼 가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페이지 한우 수급정책 수립 이 부분도 문금주 의원안을 중심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11조(한우의 수급조절)이 있고요, 거기에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원님들 차이 나는 게 송옥주 의원안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50페이지의 송옥주 의원안 3항에 한우의 예상 수급 및 경영비 고려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안 3항의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한우 사육규모별’까지는 맞고요 ‘자금의 출처별’이거 하나가 다른 의원님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런데 자금의 출처별 이게 무슨 의미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저희도 자금의 출처별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자기 돈으로 다 했느냐, 정책자금을 받았느냐, 아니면 일반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느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볼 때 표현이 좀 애매해서……

○문대림 위원 예, 법문의 표현이 이렇게 애매하게 되면……

○소위원장 이원택 문금주 의원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견해가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송옥주 의원이 추가한 ‘2항에 필요한 관리사업을 추진하되, 한우의 예상 수급, 예상 생산량, 예상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다른 의견 없으면 반영을 하지요.

그리고 박덕흠 의원님 안 이건 취지는 알겠는데, ‘수급상황에 따라 한우 사육규모별·자금의 출처별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 여부를 부여한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제외를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여기서 다른 의원님들 다 같은데 ‘자금의 출처별’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뺀다면 이 부분만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요.

○임호선 위원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건 일단 빼는 걸로 하고 나중에 최종 결정할 때 박덕흠 의원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53페이지 연구기술개발 지원 이것도 문금주 의원안을 기본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개발 1항이 있고 1호, 2호, 크게 2항 있고 3항까지 있네요. 그렇지요?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안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여기서는 53페이지 임미애 의원님 1항 2호 보면 종모우 선발이 다른 의원님들도 1호에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유전체 분석에 의한 종모우 선발과 증식 기술의 고도화’, 그러니까 문금주 의원님의 1호를 좀 더 고도화, 구체화하셨습니다. 2호를 추가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지금 문금주 의원은 1호에 하나의 표현으로 돼 있는데 임미애 의원은 한우의 품종육성을 구분했고 떼서 하나의 1호를 만들었구먼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2호를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1·2호로 구분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순번은 한 차수씩 늦추는 걸로, 순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문대림 위원** 우리 한우 품종이 몇 개가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흑우도 있고 흰소도 있고 여러 가지인 걸로 뒤에 지금……

○**문대림 위원** 여러 가지? 그러면 외래종과 섞이지 않고 한국에서 기르면 다 한우라고 보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건 아까 앞에서 한우의 정의를 어떻게 할지를 또……

○**문대림 위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어미소에서 생산된 한우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연구기술개발 지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57페이지 탄소 저감 정책 추진 이 부분도 문금주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된 안이 윤준병 의원안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58페이지에 보면 2항에 현행은, 제정안은 국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준병 의원님은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노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문금주 의원안은 5호에 보면 ‘그 밖에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윤준병 의원은 ‘한우농가는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탄소 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돼 있네요. 이 문안을 반영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안을 반영하지요.

2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항을……

○**소위원장 이원택** 예, 2항으로.

13번 도축·출하 장려금 이것도 문금주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조 낭독을 하자는 않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문금주 의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3페이지 경영비용부담 완화 대책 관련해서도 문금주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63페이지에 보시면 임미애 의원님은 조사료 활성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지원 및 사료구매자금' 이렇게 있는데……

○**소위원장 이원택** 이 문안은 넣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추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65페이지 경영개선자금 지원 이것도 문금주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문금주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9페이지 교육 지원 이 부분도 문금주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문금주 의원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자급률 확보, 어기구 의원님하고 송옥주 의원님 안이 있네요. 송옥주 의원님 안이 좀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 보이네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송옥주 의원님 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3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 부분은 현행 축산법 제32조를 그대로 가져오고 이원택 의원님께서 축산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법 내용 그대로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이따 축산법 심사 때 삭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바로 77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삭제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9페이지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문제 문금주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송옥주 의원님 안이 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규정이 있네요. 다른 건 없으시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지금 80페이지 송옥주 의원님 2항의……

○**소위원장 이원택**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그 부분만 새로운 내용이십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도축·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소규모 농가 우선지원 이 조항을 반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대림 위원** 반영하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3페이지 부산물의 활용, 문금주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 부분은, 84페이지의 송옥주·임미애 의원님 3항에 부산물 유통과정 등에 관한 관리방안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3항은 삽입을 해 주시지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의 소비 촉진 부분입니다. 이것도 문금주 의원안을 기본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되는 안이 있습니까? 박덕흠 의원님 안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지금 박덕흠 의원님과 송옥주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박덕흠 의원님 안 2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군급식 등 단체급식에서 소비 목표를 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문금주 의원안 본문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이 부분과 좀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옥주 의원님은 호로 ‘목표량 설정 및 공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의원님들과 달리 공공급식이나 소비촉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호로 신설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무래도 군급식 또는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한우가 소비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 같아요. 박덕흠 의원님도 그 안인 것 같고 송옥주 의원님도 그 안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문금주 의원님은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고.

○**문금주 위원** 문금주인데요. 이것은 농식품부 의견도 있지만 좀 너무 부처한테 과도한 규제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농림부한테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취지는 좋은데…….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언 있으신가요?

○**임호선 위원** 이것은 박덕흠 의원안 2항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지요.

이건 일단 문금주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덕흠·송옥주 의원님 의견을 좀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이것 문금주 의원안을 기본으로 보자는 건데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여기는 송옥주 의원님의 3호에 직거래 활성화,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하나 추가가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건 반영해서 하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9페이지의 도축·가공시설 지원 이 부분도 문금주 의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20조 도축·가공시설 지원 1항, 2항, 3항까지 있네요? 다른 의견 없으면 안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 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관련해서 이것도 문금주 의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팬찮으시지요? 표현에 약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 수출기반 조성 이것도 문금주 의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22조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추가되는 안이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안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아니요.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없어 보이는데요, 문금주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95페이지의 한우 품평회 개최, 어기구 의원안입니다.

○**임호선 위원** 반영 안 하셔도 팬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식품부 의견처럼 한우 품평회만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바람직 할까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축종이 있기 때문에 품평회까지 또 법률에 정하는 거는, 그냥 부처에 맡기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저도 임호선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협회나 단체, 협단체한테 주관으로 하도록 하고 관련된 필요한 예산들은 그때그때 보조받아서,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굳이 법에다 이런 근거 규정을 안 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대림 위원** 문대림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한우, 교잡우, 육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키워진 소들이 도축돼 가지고 시장으로 나가는 과정에 그게 한우 이외의 소로 구분이 돼서 나가고 있는지가 전 궁금하거든요, 교잡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단의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데 품평회까지 하면서 하다 보면,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들어가다 보면 구분 안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 정도의 교잡우도 한우 누진교배 4대째 내려가기 전에 한우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들이 꽤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품평회까지 개최하면서 하다 보면 글쎄, 이것을 법률에 담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삭제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기구 위원장님 안이 두 번째 삭제되는 것 같습니다. 삭제되겠습니다.

27번, 96페이지 기업의 생산업 진출 시 상생협력 촉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문금주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검토하면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여기 96페이지의 박덕흠 의원님 안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한우 생산업 진출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3개 안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을 기본으로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위헌소송 붙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 데……

○**문대림 위원** 기업 진출 막아야 됩니까, 한우산업을 위해서?

○**소위원장 이원택** 기업이 들어오면 지금 아마 한우 농가들 겉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겁

니다, 기업과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우 농가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규모화하고 고도화를 촉진시켜서 생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문대림 위원** 규모화와 고도화가 지금의 산업구조로 가능한지, 그런데 그러면 이원택 의원안도 그렇고 문금주 안도 그렇고 진출 시 상생협력 방안 마련, 상생협력 방안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 안 하자는 것 아닙니까? 뭐어 버리자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제한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제일 표현을 정확하게 한 건 박덕흠 의원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법안 발의 취지를 살린 건……

○**문대림 위원** 한번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면 그러면 문금주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할까요?

○**임호선 위원** 저는 박덕흠 의원님 안에 공감하면서 이 정도 전향적인 안을 내 주셨으면 박덕흠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내 주신 안을 논의하시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금주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 안은 박덕흠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하겠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도 한번 또 듣겠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의견 청취뿐만 아니라 좀 듣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한우 유전자원 보호, 한우의 세계화…… 말이 집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25조부터 29조까지 조문을 봤는데 체계·자구 저희가 준비한 거 있는데 그걸로 하시는 게 논의가 좀……

○**소위원장 이원택** 어디에 있어요, 자료가?

한우 유전자원 보호, 칡소·흑우 보호특구 지정, 한우의 세계화, 한우의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 한우의 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방금 나눠 준 자료의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기본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면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저희가 내용은 안 건드리고 체계·자구 측면에서 이 조문들이 좀 러프하게 돼 있어서 수정을 좀 했는데요,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소위원장 이원택** 예, 한번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28조입니다.

1항에 보면 ‘후대 세대’인데 ‘후세대’로 했고요. 1항에서 ‘국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단위’ 이 부분은 뺏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서는 주어가 없어서 국가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4항에서는 한우의 정액·수정란 등의 국외반출은 정부 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농업생명자원 보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우의 국외반출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29조에 칡소, 흑우 보호특구 지정인데 흑우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항에 보시면 임미애 의원안이 ‘품종내 아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칡소, 흑우’로 돼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품종 중 흑우 등 개체수가 적은 품종’으로 좀 수정을 했고 이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종’으로 돼 있는 걸 ‘품종’으로 했고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29조는 ‘시행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시행한다’로 고쳤는데 30조와 31조가 다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그것과 체계를 맞췄습니다.

2항에서는 ‘칡소와 흑우’를 ‘제1항에 따른 품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3항은 ‘다양성’으로 돼 있는데 1항에서 산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30조는 한우의 세계화인데 2항에서 한우의 세계화가 뭔지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각 호로 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한우의 세계화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했고.

1호에서는 한우고기 및 한우가공식품으로 돼 있는데 지금 4호에는 한우 상품도 있기 때문에 한우고기, 한우가공식품 및 한우 상품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육포 같은 게 될 수가 있고 한우 상품 같은 경우는 한우 가죽을 이용한 상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호에서는 가죽, 뿔, 지방 등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현행 제20조에, 그러니까 제정안의 20조에 부산물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한우 부산물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호는 방한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수정했고 한우고기, 한우가공식품 및 한우 상품 이렇게 했습니다.

5호는 FAO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로 수정을 했고 유전 및 문화적 가치를 유전자원, 지금 28조에 ‘유전자원’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31조, 동일하게 필요한 시책을 2항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 변경은 없이 그대로 1호하고 2호를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2호에서는 가치 인식, 존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식, 존중’을 ‘인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항은 국가는 국가 운영 역사 문화 관장기관에 할 수 있다 했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국가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용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2조는 한우의 날을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로 제정을 했는데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한우의 날’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체계·자구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안이 잘 부합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팬참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 잘……

**○문대림 위원** 한 가지만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 한우의 유전자원적·문화적 가치 등 등재, 현재 등재돼 있는 한우 품종은 몇 가지가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재 여부는 지금……

○**문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의 한우산업의 흐름을 보고 이미 이 작업들이 상당 정도 진행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것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쯤 현재 등재돼 있는 품종을 확인하시고 그대로 가도록 되겠다면 가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알겠습니다. 부처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체계·자구 수정의견 드려도 되나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지금 주셔야 됩니다.

○**임호선 위원** 28조의 한우 유전자원 보호 조항인데요. 1항하고 2항이 1항 내용에……

○**소위원장 이원택** 몇 페이지요?

○**임호선 위원** 1페이지입니다.

2항이 사실은 1항에 거의 포함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문금주 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임호선 위원** 그래서 저는 유전자원 운영 관리에 이게 포함될 수 있으면 2항을 굳이 규정을 해야 되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항 같은 경우에는 한우의 국외반출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원 보호 차원을 규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한우 유전자원의 국외반출로 좀 명확히…… 한우의 국외반출이라고 하면 고기 수출하는 것까지도 다, 의미가 너무 넓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좋은 지적 같습니다.

○**문금주 위원** 일리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한우의 국외반출 관련해서 현행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시에 지금 소하고, 종명은 한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우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 부처랑 다시 한번 이 표현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항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개정안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그렇게 놔뒀는데 만약에 합한다면 ‘전달될 수 있도록 한우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등 한우 유전자원 운영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하면 되겠네요.

○**임호선 위원** 저도 사실은 그 생각까지 했는데 그걸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합하지요, 문장을.

○**문금주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1항, 2항을 그렇게 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의 보칙, 문금주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03페이지의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문금주 의원안

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되는 게 있나요? 여기구 위원장 안이 있나?

문금주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의 부칙,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 1년이네요. 1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우산업법과 관련해서는 아까 정의 조항 관련해서 의견 청취를 좀 하겠다. 그 다음에 기업 진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의 조항은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소를 한우로 한다라는 걸 기본으로 정하고 다만 의견 청취를 좀 하겠다는 거였고 기업 진출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박덕흠 의원안을 기본으로 정했고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거였고. 또 하나 의견 청취 더 한다는 것이 뭐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아까 자금의 출처별……

○소위원장 이원택 자금의 출처별 그거 의견을…… 박덕흠 의원님이 그걸 빼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그 부분은 박덕흠 의원님 의견을 더 들어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우법 심사에서 대략적인 심사는 이렇게 정리하겠고 다음 차수 때 또 최종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팬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 1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11시36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3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14조의2를 신설해서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1년 꿀벌 약 40만 봉군이 폐사하였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재 농진청에서 꿀벌 격리 육종장 및 증식장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실시근거를 법률화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일부 수정 필요입니다.

현행법 12조와 일부 중복되지만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다만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 주체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해서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1항과 2항을 통합하고 8조가 꿀벌의 신품종 육성이기 때문에 조문 위치를 8조의2로 신설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기재부는 신중검토 의견이고 농진청이나 농림부는 수정동의 의견입니다.

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농진청에서 부안군 위도의 위도 격리 육종장에 지난 18년부터 20년 까지 3년간 60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우수 여왕벌 보급 증식장 사업운영비로 약 7억 5000만 원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선 위원** 제가 이걸 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여기 위도에다가 격리 육종장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양봉 관련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지원근거만으로는 꿀벌이라고 하는 축종의 보전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이런 부분을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별도 조항으로 담음으로써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꼭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가요?

○**임호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동의하시면 이 안은 수석전문위원 의견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임호선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고요. 지금 6명……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어디 계신지……

○**임호선 위원** 아니, 다음에 함께 처리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이거 오늘 결정하시게요.

전종덕 위원님하고 임미애 위원님 보좌관님 계신가요?

○**임미애의원보좌관 하진미** 위원님은 지금 잠깐 의원실에 일이 있으셔서 가셨거든요. 오시라고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오시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종덕 위원님은?

○**전종덕의원보좌관 박성철** 의원회관에서 촬영 중이신데 제가 연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칙 전혀 상관없으시지요?

○**임호선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건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잠깐 이것 관련해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의견 듣기로는 정부에서…… 지금 저희가 ‘꿀벌의 보전’을 ‘꿀벌의 생태계 보전’으로 수정을 했는데 3페이지 육종장 운영 규정에 보면 꿀벌 유전자원 보존, 우수 품종 육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꿀벌의 유전자원 보존, 우수 품종 육성 이렇게 지금 의견이 있으신데……

○**소위원장 이원택** 그거 반영해 주지요, 뭐.

○임호선 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거 반영해서 문안을 만들지요.

그러면 이 의결은 좀 보류하고요. 좀 이따가 위원님들 오시면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

**1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11시41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자료 4번입니다. 주제는 총 4개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4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는데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행 산학협력법 39조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 개정안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의 지원근거를 있다고 수정을 했고 경비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비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농림부나 스마트팜협회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내의 시설 등에 대하여 기술수준 확인 및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입니다.

현재 거점단지는 4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서 스마트농업시설이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8페이지에 있는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지정 요건에 맞는 온실, 축사 등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확인·평가’를 ‘평가’로 했는데 평가에는 확인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김제·상주, 밀양·고흥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비용의 출연·지원 근거와 금융·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타당한데 19조의2 및 제20조의2가 사실 재정 지원 또는 금융비용 지원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2항으로 했습니다. 또한 ‘판로개척’을 ‘판로 개척 지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기업 등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스마트 관련 매출액이 1000억 미만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농림부에서는 개정안처럼 기업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는 자구 수정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규제 점검 및 개선 의무 규정 신설인데

‘저해’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는’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문대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부 동의하고요. 다만 기업 지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정하자는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만 제한하자는 의견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제가 농식품부 의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농업이라는 것이 중견기업·중소기업 육성은 기본이고 사실 대마(大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중소기업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 임호선 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요, 문대림 의원님 개정안을 보면 ‘연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보면 ‘연구’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산학협력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학교가 특정 관련 단체나 기관하고도, 기업하고의 공동 수행이 아니라 인근 농업 관련 단체나 이런 데하고 함께 협력을 하든지 하면 반드시 연구뿐만 아니라 연구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학교·기관, 단체가 수행하는 연구 그러면 특정 학교, 특정 기관, 특정 단체가 수행하는 연구에 국한돼서 필요 경비 지원 범위가 너무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의견, 4쪽에도 보시면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구라고 이렇게 수정동의 의견을 내셨고요. 반면에 스마트팜협회는 연구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양쪽의 수정동의와 동의 의견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협회에서는 공동 수행까지도 담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농식품부에서는 이게 단독 수행 연구로 좁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스마트팜협회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고요.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다 포괄이 되는데 등이 표현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등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확대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등을 뺏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기관—기업은 들어가나요?—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줄 수 있다. 기업은 들어가나요? 영농조합 이런 건 단체로 포함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여기는 단체가 기업과 같이 하는……

○**문대림 위원** 기업과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기업은 깔고 가는 거라고 봐야 되고. ‘연구 등’을 유지하고 가면……

○**소위원장 이원택** 스마트팜 같은 경우 영농조합 만들어서 좀 규모 있게 하잖아요. 그런 영농조합도 단체에 해당되는 건가요? 어디에 해당되지요?

○**문대림 위원** 단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단체에 해당되지요.

○**임호선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한 농식품부 의견에 분명히 여기 공동 수행에 대한 의미는 담겨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경비 지원만을 동의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볼 때 단독 수행으로 제한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좀 열어 놔야 될 것 같고……

○**임호선 위원** 그런데 4쪽에 보시면 농식품부 의견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구라고 국한시켜서 동의 의견을 준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농식품부 의견은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는 단독이라는 거를 제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저희는 개정안이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윤준병 위원**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공동이나 뭐 이렇게 규정을 안 해야 공동도 가능하고 단독도 가능하다 이렇게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다만 ‘등’ 자를 넣는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했는데, ‘등’을 넣는 것과 관련해서 앞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기관 또는 단체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기업이 포함돼 있다면 저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대림 위원** 기업은 깔고 가는 거고요, 단체에는 스마트팜 법인들이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임호선 위원** 공동 수행의 의미를 법조문에 담지 않는다면 지금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단독 수행에 대한 동의 의견만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단독이나 아니면 공동 수행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라는 의미를 법조문에 담아 넣어야 될 것 같다 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문구를 집어넣지요.

그러면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공동 및 단독으로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연구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임호선 위원** 저는 그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3페이지에 보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작성한 것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인데 여기에 단독·공동으로 수행하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소위원장 이원택**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문대림 위원** ‘등’을 넣어야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연구 등’도 넣어 놓지요, 광의의 개념으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그러면 여기에 빠진…… 학교·기관 또는 단체, 기업은 없이……

○**문대림 위원** 기업이 들어가야 되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키우려면, 깔고 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업들 중에 스마트농업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넣어 줘야 될 것 같아.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정의견만 보신 건데 저희 개정안에는 기업이 명시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기업을 넣어 주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기관 또는 단체, 기업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기업 추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기업 추가. 왜냐하면 저희 전라북도 지역도 기업들이 스마트농업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는데 이 안에 대한 정부안을 체계를 다시 주셨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체계가 뭐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좀 양이…… 다양하게 수정을 해 가지고요. 한번 보여 드릴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체계·자구 문제예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내용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한번 보셔야…… 조문의 위치도 좀 바뀌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조문의 위치는 체계·자구고, 내용상에는 지금 여기 의견에 나와 있는 대로의 차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컨대 방금 논의하신 학교·기관, 단체의 연구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안 계시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취지로 보건대 공동 사업은……

○**소위원장 이원택** 몇 페이지지요, 자료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거를 깔아 드릴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깔아 주세요.

정부 측에서 보내 온 자료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페이지는 안 매겨 있는데 첫장에 보면 정부 대안에서 연구로 제안한 거지요, 지금? 그게 있고.

두 번째, 첫장 뒷장에 보면 3항에 정부 대안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항에 따른 연구를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문안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없어 보이는데요, 내가 볼 때?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린데 아까 ‘단독으로’라는 말은, 정부 의견이 ‘단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공동으로’ 들어가 있네?

○문대림 위원 여기에서 단독과 공동의 개념이 굳이 단독이라는 개념을…… 어쨌든 기업과 학교가 하는 게 공동이잖아요, 기업과 단체랑 하는 것도 공동이고. 그래서 굳이 단독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그 조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만 추가하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우리가 아까 확정한 안 중에……

○문대림 위원 ‘기업’이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소위원장 이원택 ‘기업하고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연구 등’으로 하고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정부가 한 거니까 ‘우선적으로’만 집어넣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가서 ‘온실, 축사,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결정한 거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 내용은 조문을 신설하지 않고 8항에 추가해서 하자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8항에 보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문대림 위원님, 괜찮으시겠지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문대림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8항으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정부 대안을 보면 19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 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정부는 19조를 개정하자는 건데요. 저희는 그냥 19조의2로, 그러니까 19조 2항에 넣어도 될 것 같고 큰 차이점은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등’이 들어갔고요.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개정안 20조에 있는 재정 및 금융지원 시책을 반영해서 했는데 정부 대안은 개정안 2항에 출연·지원 그 부분을 차용한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정부안이 더 적극적으로 연 거네요?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안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문대림 위원 예, 정부안도 괜찮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안은 중소기업으로 국한하는 거잖아요, 기업 분야에서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아까 문대림 위원님은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이시니까……

○문대림 위원 예.

-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안 쪽으로 정리하지요.
-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다만 조문은 19조의 2항, 3항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게 하시지요.
-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취지는 다 반영됐으니까요.
- 문대림 위원** 이제 의결을 해 주셔야지요.
- 소위원장 이원택** 의결을 해야지요.
- 문금주 위원** 전종덕 위원 안 와요?
-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임미애 위원님 오셨어요.
- 문금주 위원** 아, 됐어요?
-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마치겠고요.  
아까 의결정족수 때문에 의결을 못 했는데 두 가지 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심사를 12시 반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 1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2)

(12시01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5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제13조의2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정 필요 의견입니다.

현재 40세 미만 청년농은 전체 가구의 1.2%, 50세 미만이면서 영농 경력 10년 미만인 후계농은 3.2%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계·자구 수정의견인데요.

첫 번째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지정 기준이 필요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의 수행 근거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운영’을 ‘지정·위탁’으로 일반적인 입법례로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5호의 ‘네트워크’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연계·협력’ 지원으로 수정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6호의 자구 정리입니다.

‘유도’를 ‘지원’으로, 지정 목적이 농어촌 정착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의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2개 부처임을 고려해서 수정했습니다.

또한 2항을 신설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전 협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항은 업무 수행에 구체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업무로 좀 명확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특히 운영비는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는 자구 정리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는 제6항에 통보 규정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의 벌칙 적용 의제도 정착지원센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신설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귀농귀촌지원센터,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이 있고 다들 국비 운영비는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될 경우에 개소당 5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떻든 후계·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촌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드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냈는데 수정의견 중심으로 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문 검토에 보면 후계·청년 농어업인의 정착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 신설인데 13조의2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임종득 의원안에 대해서.

이거 조문 낭독 안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3페이지 5호도 네트워크라는 표현 대신 바꾸는 거 의견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6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변경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 3항 특별하게 의견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지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6항하고 7항이 들어간 부분과 관련해서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다른 의견은 없어 보입니다.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잠깐만…… 3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와 대체로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 협의 이후에 또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3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3페이지에 정부 부처 의견 2번 농식품부가 있는데요. ‘정착 지원센터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식으로 수정의견을 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명암에 있는 위쪽, 위쪽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이렇게 했는데요. 농림부가 ‘안정적인 정착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 문안은 그렇게 바꾸셔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이 후계농 정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들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기능이 결국 지역에 내려가서 보면 대단히 중첩되고……

○**소위원장 이원택** 중복된다?

○**임미애 위원**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주로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흥청 산하 기관인 기술센터에서 보통 이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센터가 없어서 후계농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후계농 정착지원센터를 구성하는 걸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국…… 예를 들면 의성군에 가서 이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을까를 고민을 해 보면 기구는 난립해 있으나 기능은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여당이 지금 법안 심의에 안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임미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 패스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 부분은 귀농귀촌지원센터, 도시농업지원센터, 농어업고용 인력지원센터와 어떤 현장에서 중복 문제, 제대로 작동하는 문제 이런 걸 한번 차수에, 그런 걸 좀 점검해서 농식품부가 한번 보고토록 하고 심사하겠습니다. 팬참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한 차수 미루겠습니다.

---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12시10분)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및 14항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6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임미애·이원택 의원님이 각각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임미애 의원님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하는 거고 이원택 의원님은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각각 법률로 규정하고 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연번 4번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3분의 1 이상을 생산자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현행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2013년부터, 무역정책심의회는 95년부터 회의를 하고 있고 24년도에는 농산물심의회는 10회, 수급조절위원회는 4회 열린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임미애 의원님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보시면 현행 부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자문 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번 4번의 심의사항도 보면 농산물 수급안정 제도, 비축용 농산물, 수입농산물 할당관세 내용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도 ‘농축산물’을 ‘농산물’로 변경하고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외 심의사항은 동일합니다.

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심의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신설돼서 그 임기는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수용될 경우 부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법적 위원회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이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24년 5월에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폐지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 수용 시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약칭으로 규정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의 약칭과 중복되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농림부와 행안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농림부 소관 위원회는 총 28개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을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 대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해수부장관 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 오타로 보여지고 농림부장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생략하고요.

17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생산자 대표가 4명 들어가 있고 임기는 5월 15일까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존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인데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기존 자문사항의 심의사항 전환에 따른 심의를 각각 의무화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운영 심의사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일부 '수급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수급조절위원회이기 때문에 '수급조절'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 법의 핵심 조항 중의 하나인데, 심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비축용 농산물 수입 결정 사항이나 수입물량 증량 또는 할당관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논의 할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심의사항과 중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조 4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수정해서 제4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의 이원택 의원님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훈령에서 설치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축산물을 농산물로 변경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대 농안법이나 관련 법에 따르면 농산물로 변경하더라도 축산물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3페이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운영 현황을 보면 24년도에 10회, 23년도에 9회, 22년도에 8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3분의 1 이상을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하고 있는데 개정안 수용 시에 임명권자 부분 또는 위원 정수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수산물이 없으므로 농수산 부분을 농산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심의사항인데 현행 심의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2년간 심의사항, 상정된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 공포 후 6개월이고요.

41쪽부터는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법안인데 이거를 오늘 꼭……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 지금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고 검토의견을 보면 정부 의견 대다수가 지금 수용곤란으로 나오는데 한 번쯤은 들어 보고 추진하면 어떻겠냐…… 안 됩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심사를 해야지요.

○**문금주 위원** 심사는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통과를 목적으로 해야지 이것 심사를 목적으로만 해서 되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41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임미애 의원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이원택 의원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41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원안을 또 봐 가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먼저 지금 봐야 할 게 7페이지지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서 상향하는 겁니다. 지금 7페이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법률 상향과 관련해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기능이라든가……

일단은 지금 이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안 만드는 추세고 그것을 배제하는 추세잖아요. 그래 가지고 정책위원회를 통으로 놓고 거기서 심사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 측 의견을 일단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이 법안을 좀 심사를 해 봐 주겠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해서 그러면 이 위원회를 안 만든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내용을 관철할 거냐 이건 또 마지막에 저희들이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현재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법률 상향 및 심의기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사실 정부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저희가 논의가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정부 측에서 워낙 입장은 분명하게 다 거부한다 얘기해 놓으니까, 수용곤란으로 오니까.

○**윤준병 위원** 저 한 말씀 드릴게요.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정부에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너무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농산물 수급이나 이 관련되는 내용 중에는 우리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이나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자기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정책위원회 구성 멤버로 보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중첩이라고 하는 정부의 또 다른 입장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존치하

거나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존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수급조절위원회하고 무역정책심의회 기능을 따로 같이 둘 건…… 지금 위원회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따로따로 둘 건지 아니면 포섭해 가지고 같은 위원회에서 농어민들의 입장이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대신에 수급조절위원회의 내용상 보면 할당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여기서 한다 하는 내용이 관세법하고 충돌되지는 않는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회에서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그쪽의 의견은 줄 수 있겠지만 심의해서 그걸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여기 덧붙여서, 심의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결정해서 여기서 할당관세 물량을 최종 결정하고 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의기능이고 심의위원회, 조절위원회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양파가 할당관세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양파가 조금 있으면 수확철인데 이 시기를 좀 피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할당관세를 확정 지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면 수확 시기를 피해서, 그래서 물건이, 그러니까 물량이 없어서 물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때 할당관세라는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건데 이 할당관세가 너무 무분별하게 적용이 되면서 수확 시기를 코앞에 둔 양파의 경우도 이제 물량이 들어오니 그러면 이런 경우에 농가가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것인가가 그 통로가 지금은 없는 상태여서, 그래서 지금 수정의견으로 전문위원님 올리기는 하셨는데 심의 내용이지 이게 의결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저는 심의할 때도 시기 조절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준병 위원** 목표를 조금, 목표 내용을 좀 조정해서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사실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에 대한 어떤…… 정부가 지난 3년간 운영을 해 왔는데 그 폭락과 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좀 농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만들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취지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뜻이,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TRQ나 할당관세 등과 관련한 그 부분은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쪽에서 심의하는 것이 현재 구조상은 맞아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구조상은 그쪽에서 심사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윤준병 위원** 만약에 존치를…… 그대로 두 기구를,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그 기구가 다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생산자들의 입장이 대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대변할 수 있도록 법정 위원회로 끌고 가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을 3분의 1 이상을 생산자로 넣자라든가 심의 대상을 이걸 넣자든가 빼자든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거 무역정책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내용이 어디 들어

있지요?

○윤준병 위원 50쪽.

○임미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할당관세나 TRQ와 관련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원택 의원님 제출하신 개정안 중에서 여기에 이 구성을 조금 더……

○윤준병 위원 자세히.

○임미애 위원 예, 구체화시키고 열어 두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제가 하나, 임미애 의원님이 여기 발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지나가다가 체크를 했는데 25페이지에 보면 심의사항 신설 중에 농산물 수입…… 4항이지요. 25페이지 하단 중에 ‘농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 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부장관은 15조의2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임미애 위원 이게 할당관세의 경우에는 들어올 때 이미 aT에서, 예를 들면 수입 소고기의 경우는 한우협회를 통해서 수입 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저기 위원장님, 이 법은 여당은 참석 여부를 떠나서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들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음 심의 때 정부 측 의견을 해 가지고 이걸 들어 봐야지 이것 우리끼리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임미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임호선 위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쟁점 정리하고요,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정부가 안 온 거거든요. 정부가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정부 의견을 들어야 돼요? 정부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자기 의견을 내야 돼요.

○윤준병 위원 맞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안 와서 안 내는데 왜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건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차관한테 ‘당신 와야 된다’……

○문금주 위원 충분히 반성할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여당 위원들이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서천호 위원 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위원이 지적한 건 때문에 그렇다, 정국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유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민생 법안이고 현안들을 해결하는 법안이고 또 우리가 강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심사하고 의논해 가면서 하자고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정부가 안 오는 이유는 저는……

정부도 자기가 와서 얘기할 때 얘기를 해야지 안 오는 걸 우리가 자꾸 들어주려고 하면 안 된다, 버스 떠나면 끝내 버려야지 자꾸 정부 의견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법안심사소위 때 정부가 의견을 가지고 와서 자기 의견을 내야지, 그러면 우리도 합리

적으로 듣고 조정하고 판단해 주고 미를 건 미뤄 주고 정부 측 것 수용할 건 수용해 주는데, 안 오는 정부를 왜 우리가 자꾸 그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저는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금주 선배님이 얘기하시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정부 의견을 안 듣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법안이 있는 것처럼, 관계없이 우리가 ‘이것은 정부 의견 필요없다’ 해서 밀어붙이는 법안이 있는가 하면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정부 측 의견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대림 위원** 저도 어쨌든 수급조절위원회의 법률 상향 이러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 주신, 생산자단체들이 어쨌든 참여 의지, 품목과 시기 조절에 관한 요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주산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얘기들은 직접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쨌든…… 제가 최근에 양배추와 관련해서, 양파와 관련해서 할당관세, TRQ 물량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져 봤는데요, 정부 입장들을 직접 들어 보고 지적하면서 법률안은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이것 다 물어봤던 거예요. 정부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TRQ 그때 국감장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저희 의원실에 와서도 토론도 하고 그랬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게 아닙니다. 정부는 딱 하나예요. 법정위원회를 윤석열 정부가 안 두는 추세인데 두는 것……

○**문금주 위원** 그건 말도 안 되고.

○**소위원장 이원택** 두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하나 있고.

○**문금주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

○**소위원장 이원택** 심의 대상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되고, 전혀 쟁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다만 생산자단체를 3분의 1 이상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게 문제일 것 같고. 그걸 주산지협의체다? 그러면 주산지협의체가 잘 작동됐으면 문제가 없었어야 맞지요, 자기네들대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요. 무역정책심의위원회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회의록도, 안건지도 사전에 안 주고, 안건지 사전에 안 줘요. 와서 당일 날, 아니면…… 무역정책심의위원회는 다 서면 의결했어요, 서면 의결.

TRQ, 할당관세 그것 다 할 때 정부가 이 회의를 소집을 안 했어요. 다 서면 의결한 거예요, 서면 의결.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설령 하더라도 농민 대표자가 가서 꽂 소리라도 하게 해야지, 다 서면 의결한 거거든요. 이것 우리가 정부 의견을 몰랐던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임미애 위원님은 의견 어떠신가요?

○**임미애 위원** 저는 이원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좀 무분별한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어 있다 해서 이것 조정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방침이 있었다 하더라

도 실제로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많고 들러리 세우는 게 너무 많아서요. 필요한 위원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아까…… 무역정책심의위원회는 제 기억에 최근 3년간 정식으로 회의 소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서면 의결한 거예요, 다 서면으로. 개인들한테 다 보내 가지고 서면으로 하고 거기에 안건 설명도…… 안건지에 그러면 설명이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부실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 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감사원 감사 요구도 의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기능을, 농민들 입장에서 안 되더라도 꽤 소리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산지협의체 그건 제가 볼 때는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이고, 법적 절차도 아니고요. 무역정책심의회는 법적 절차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좀 더 심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일정도 계신 것 같고……

○문대림 위원 문금주 위원은 어디 갔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요.

○문대림 위원 아니, 끝까지 심의해서 의결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없어 가지고……

(웃음소리)

○소위원장 이원택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관 및 비서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 ○출석 위원(7인)

문금주 문대림 윤준병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